

학점교류에 관한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학칙 제32조에 따라 재학기간 중 학교에서 인정하는 국내의 타대학이나 일정기간 외국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그 이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의의) 대학이 사회기여에 이바지하고 방학 중 면학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.

제3조 (대상) 1학기이상 등록하고 재학생인 경우에 허락한다.

제4조 (인정과정 및 적용범위)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정과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해외선교현장교육, 외국어연수, 외국음악연수, 해외실습
- ② 사회봉사영역
- ③ 경인지역 학부학점교류
- ④ 신학계대학 학부학점교류
- ⑤ 국제교류학생
- ⑥ 사이버대학교와의 학점교류<신설 2008. 3. 1>
- ⑦ 군복무중 인정학점<신설 2011. 2. 28.>

제5조 (신청) 매학기 말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정해진 기간에 신청 후 방학동안 과목을 성실히 수행한 후 개학 후 1주일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. <개정 2007. 8. 8>

제6조 (기간) 학점교류에 관한 이수신청은 수업연한 내에서만 허락한다.

제7조 (수강과목) 학점교류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교양 및 전공과 관련있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08. 3. 1>

제8조 (수강신청) ① 학점교류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 30일전까지 교무처에서 학점교류지원서를 수령, 작성한 후 학점확인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7. 8. 8>

- ② 학점인정 신청은 매학기 말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, 신청한 후 개학 후 1주일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.
- ③ 사이버대학교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 중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. <신설 2008. 3. 1>

제9조 (학점인정) ① 해외선교 현장교육은 2주당 1학점을 인정해 주되, 최고 2학점까지 인정한다.

- ② 외국어연수는 2주 이상(20시간) 연수인 경우 1학점, 3주 이상(60시간) 연수인 경우 2학점, 6주 이상(90시간) 연수인 경우 3학점을 인정한다.
- ③ 해외음악연수는 1주 또는 2주 이상(20시간) 연수한 경우 2학점, 3주 이상 (30시간) 연수한 경우 3학점까지 일반선택으로 인정<개정 2014. 9. 1>
- ④ 해외실습은 실무실습 3학점 까지 인정<개정 2014. 9. 1>

- ⑤ 사회봉사(전학년,전학과)는 1학기 1학점씩 총 3학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.
- ⑥ 병역법에 따른 징집·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·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범위 안에서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<신설 2011. 2. 28.>

- 제10조 (인정기준)** ① 해외선교현장교육 : 학점평가는 학점인정평가위원(신학과 학과장, 선교학 관련교수 1인, 기타 교수1인)이 심의하여 인정한다. <개정 2007. 8. 8>
- ② 외국어연수 : 영어는 영어과, 일본어는 일본어과, 중국어는 중국어과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사 결정 <개정 2007. 8. 8, 2014. 9. 1>
 - ③ 해외음악연수 : 수료증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 결정<개정 2014. 9. 1>
 - ④ 해외실습 : 이수 후 해당 학과장이 심사(성적) 결정<개정 2014. 9. 1>
 - ⑤ 사회봉사 : 운영에 관한 실무는 사회봉사센터에서 주관하여 담당한다. <개정 2007. 8. 8>

- 제11조 (신청절차 및 제출서류)** ① 해외선교현장교육은 방학전까지 해외선교여행 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 여행후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 개강후 1주일 이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한다.

1. 학점인정신청서 1부
 2. 선교여행일지 1부
 3. 여행증명(여권 및 비자)사본 1부
 4. 공인된 기관의 선교사역 증명서 1부
- ② 외국어 연수는 방학전까지 외국어연수 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며, 연수후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 개강후 1주일 이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한다.
1. 학점인정신청서 1부
 2. 여행증명(여권 및 비자)사본 1부
 3. 연수기관의 수료(성적)증명서 1부
 4. 연수기관의 공인(authorized)증명서 1부
 5. 기타 첨부서류
- ③ 해외음악연수는 방학전까지 해외음악연수 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며 연수후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 개강후 1주일 이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한다.
1. 학점인정신청서 1부
 2. 여행증명(여권 및 비자)사본 1부
 3. 해외음악연수 수료증 또는 기타 증빙자료 1부<개정 2014. 9. 1>
 4. 기타 첨부서류
- ④ 해외실습은 방학전까지 해외실습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며 실습후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07. 8. 8>
1. 학점인정신청서 1부
 2. 여행증명(여권 및 비자)사본 1부
 3. 실습 수료증 1부

4. 연수기관의 공인(authorized)증명서 1부

5. 실습일지 1부

- ⑤ 사회봉사영역은 1학점(Pass/Fail)으로 하며 수강제한 학점 초과할 수 있다.(단, 최대 18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함) 졸업이수 학점 (130학점)에 포함한다.<개정 2011. 11. 23.>

제12조 (학점제한) ① 학점인정은 P/F로 구분하고 학점인정시기는 이수 후 학과장이 성적을 제출하여 발효되고 취득학점은 학기당 학점제한인 18학점에 포함한다. <개정 2007. 8. 8., 2011. 11. 23.>

② 해외선교현장교육, 해외외국어연수, 해외음악연수의 학점인정은 총 6학점이하로 한다.

③ 사이버대학교 과목의 이수는 학기당 2과목 이내, 졸업시까지 15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<신설 2008. 3. 1., 개정 2015.2.23>

제13조 (성적표시) 학점교류나 학점인정과정으로 취득한 이수과목은 성적 표에 ‘타대학이수’ 및 ‘학점인정이수’ 표시를 한다.

제14조 (학칙준용)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각 과정의 협약서와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이 제정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내규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2조(학점제한)은 2012학년도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.